
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5. 7. 6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안종열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

양형위원회는 2015. 7. 6. 16: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6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

①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

○ 선정 기준

-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등 양형기준의 목적
-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
- 범죄 발생 빈도
- 1, 2, 3, 4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
 - ※ 1기 양형기준 :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, 무고범죄
 - 2기 양형기준 : 약취·유인, 사기, 절도, 공문서, 사문서, 공무집행방해, 식품·보건, 마약범죄
 - 3기 양형기준 : 증권·금융, 지식재산권, 폭력, 교통, 선거, 조세, 공갈, 방화범죄
 - 4기 양형기준 : 배임수증재, 변호사법위반, 성매매, 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, 장물, 권리행사방해, 업무방해, 손괴, 사행성·게임물

○ 특징

- 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**5기 설정 대상범죄군** 사건들의 비율은 **3.06%** 이고,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**90.62%**임
- 도주·범인은닉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⇨ 위증, 무고범죄군과 함께 **사법질서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완비**
- 부정수표단속법위반, 석유사업법위반, 대부업법위반, 근로기준법위반 등 **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군**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

○ **선정된 대상 범죄군**

■ **도주·범인은닉범죄(증거인멸범죄 포함)**

-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
- 위증, 무고범죄군과 함께 사법질서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완비

■ **통화·유가증권범죄**

- 통화위·변조, 유가증권위·변조,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
- 법정형이 비교적 높고,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 입히는 사례도 많음

■ **석유사업법위반범죄**

- 가짜석유제품의 제조·판매, 정량미달 판매, 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등
-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, 국민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며,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

■ **대부업법위반범죄**

-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,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

■ **근로기준법위반범죄**

- 강제근로, 임금,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대상
- 발생빈도가 높고, 국민생활에 밀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

■ **과실치사상범죄**

- 안전사고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반영
- 과실범죄군의 기본 유형이고 발생빈도도 높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큼

②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

■ 교통범죄

-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성과가 축적되었고,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에 대한 점검 요구가 있음

■ 공무집행방해범죄

-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성과가 축적되었고,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에 대한 점검 요구가 있음

■ 절도범죄, 장물범죄

- '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'의 상습절도, 상습장물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한 양형기준 수정 필요

■ 위증범죄

-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앞서 설정하기로 한 증거인멸범죄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 대상에 포함시킴

③ 양형기준 설정 방식 및 시기

○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 의결, 시행

-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,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(2015. 4. 27.~2016. 4. 26.)와 하반기(2016. 4. 27.~2017. 4. 26.)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, 시행키로 함

○ 전반기 양형기준 수립 대상 범죄군

- 양형기준 설정 범죄
근로기준법위반범죄, 석유사업법위반범죄, 과실치사상범죄

- 양형기준 수정 범죄
절도범죄, 장물범죄, 교통범죄

○ **후반기 양형기준 수립 대상 범죄군**

- 양형기준 설정 범죄
도주·범인은닉범죄, 통화·유가증권범죄, 대부업법위반범죄
- 양형기준 수정 범죄
공무집행방해범죄, 위증범죄

※ 양형기준 수립 절차

단 계	담 당	내 용	
1	양형기준 초안 작성	전문위원	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
↓			
2	양형기준안 의결	위원회 소위원회	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
↓			
3	공청회 및 의견조회	위원회	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
↓			
4	양형기준안 수정	위원회 소위원회	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
↓			
5	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	위원회	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

4 **향후 일정**

- 개별 범죄군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의 결정
 -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하여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된 범죄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유형의 범위를 검토
-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
 -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들에 관하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

실시

-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 추출, 연관성 분석,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 분석 실시

○ 다음 위원회 67차 회의는 **2015. 9. 7.(월)** 개최 예정

-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, 형량범위 등에 관한 논의 예정